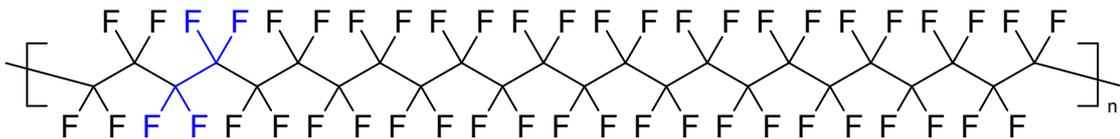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Q&A

Q. 불소수지 코팅재가 과불화화합물 인가요?

불소수지는 합성수지의 일종으로, 늘어붙지 않는 프라이팬이나 냄비 등의 코팅에 사용되는 PTFE(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일명 “테플론”)가 대표적이며, 과불화화합물의 일종인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등과는 화학적 구조나 물리적 특성이 전혀 다른 고분자물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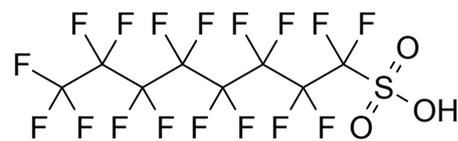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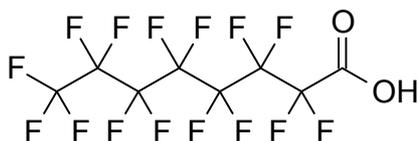
* 프라이팬에 코팅되는 물질은 PTFE와 같은 불소수지로, PFOA나 PFOS 같은 과불화화합물이 코팅되는 것은 아님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PTFE, Polytetrafluoroethylene)

Q. 과불화화합물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과불화화합물은 탄화수소의 기본 골격 중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형태의 물질로, 탄소가 6개 이상인 과불화술폰산류와 탄소가 7개 이상인 과불화지방산류 및 그 염류 등 여러 가지 화합물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PFOA와 PFOS가 있습니다.



과불화옥탄산(PFOA, Perfluorooctanoic acid)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Perfluorooctanesulfonic acid)

Q. 과불화화합물은 어디에 사용되어 왔나요?

과불화화합물은 계면활성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 등이 쉽게 스며들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특성이 있어, 산업계 전반에 걸쳐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의류, 카펫, 가구, 신발, 마루광택제, 소방약제, 세척제, 페인트, 니스, 왁스, 인화지, 반도체 및 LCD 제조, 컬러프린터·복사기, 항공기, 금속도금, 살충제, 석유생산 등에 사용되어 왔으며, 눌음방지(non-stick) 코팅 조리기구와 같은 프라이팬, 냄비 등에 사용되는 불소수지 제조시 PFOA가 가공보조제*로 사용된 바 있습니다.

* 가공보조제 : 합성수지 제조 시 반드시 필요한 원료물질은 아니며, 원활한 중합반응을 위하여 보조적으로 첨가되는 유화제 등의 물질

Q. 과불화화합물은 어떠한 위험성이 있나요?

과불화화합물은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는 특징(난분해성)을 갖는 잔류성유기화합물질의 일종으로 자연계나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물실험에 의하면 간독성, 암 유발 등이, 인체역학연구에서는 갑상선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이 보고된 바 있으며, 체내에서 안정성이 높아 과불화화합물의 일종인 PFOA와 PFOS의 경우 인체에 대한 반감기*는 3.8~5.4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 반감기 : 생체 내에서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Q. 불소수지 코팅 프라이팬에 과불화화합물이 얼마나 들어 있나요?

유해논란이 되어 왔던 과불화화합물의 일종인 PFOA는 프라이팬의 코팅제로 사용되는 불소수지의 제조시 가공보조제로서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PFOA를 사용하지 않는 제조기술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팅원료인 불소수지에 PFOA가 들어있다 하여도, 프라이팬에 코팅과정 중 430℃ 정도에서 소성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PFOA가 잔류되어 검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Q. 불소수지(PTFE)를 섭취했을 경우 문제는 없나요?

불소수지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므로, 쉽게 분해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라이팬이나 냄비에서 떨어진 불소수지 조각 등을 실수로 먹는다 하여도 체내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므로 인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인 불소수지인 PTFE는 국제암연구소*에서 Group 3 (인체발암 비분류 물질)로 인체에 발암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물질의 인체 발암성을 기준으로 Group 1~4로 분류하고 있음

Q. 코팅된 프라이팬 사용시 주의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불소수지가 코팅된 프라이팬은 조리하거나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할 때 날카로운 금속을 사용하면 금속코팅이 벗겨지거나 흠집이 생겨 이물질이 낄 우려가 있으므로, 조리 시에는 목재, 합성수지제 등 부드러운 재질의 뒤집개를 사용하고, 세척 시에도 금속 수세미 대신에 부드러운 수세미와 주방세제 등을 이용하여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로 구입한 프라이팬 등 조리기구는 사용하기 전에 깨끗하게 세척한 후 사용하고, 빈 프라이팬은 오래 가열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표시사항 등에 있는 사용 시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 프라이팬 이외에 과불화화합물로 문제가 되었던 제품은 무엇이 있나요?

외국에서 PFOA를 생성할 수 있는 물질이 식품을 싸는 종이포장재의 코팅제로도 사용되어 논란이 된 바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폴리에틸렌(PE)이 코팅된 포장재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식품용 종이컵, 포장재 등에서 PFOA, PFOS가 검출된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검출된 양은 ppb* 수준의 미량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 ppb : 10억분율(parts per billion)

Q. 조리기구 중 과불화화합물 기준·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식약처에서는 과불화화합물에 대하여 인체노출 안전기준인 일일섭취한계량* (TDI, $\mu\text{g}/\text{kg}\cdot\text{bw}/\text{day}$)을 PFOA는 1.0, PFOS는 0.15로 각각 설정하고 있습니다.

* 일일섭취한계량(TDI) : 평생 동안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양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프라이팬 등 불소수지 코팅 주방기구에서 PFOA 검출수준은 불검출~1.6ppb(평균 0.034ppb) 수준으로 낮았으며, 안전성 평가 결과 식품용 기구로부터 이행되는 양은 일일섭취한계량(TDI) 대비 0.003%로 안전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모니터링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한 식품을 통한 PFOA와 PFOS의 인체 노출수준은 일일섭취한계량 대비 각각 0.3%와 1%로 안전한 수준이었습니다(15 위해평가보고서).

따라서, 식품이나 식품용 기구 등에 대하여 과불화화합물 기준·규격을 설정할 필요성은 낮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어느 나라에서도 식품용 기구 등에 대하여 과불화화합물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분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는 제도

♣ 보호조치 요구 방법

전화 02-360-3761 /우편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팩스 02-360-3567